저작물 출판 계약서

저작권자 **이제현**(이하 "갑"이라 한다)와(과) 출판권자 **주식회사 책만**(이하 "을"이라 한다)은 아래에 표시된 저작물(이하 "본 저작물"이라 한다)을 출판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.

제 1 조 (저작자 및 저작물의 표시) 을이 출판할 저작물은 다음과 같다.

저작자 표시	성 명	이 제 현
저작물 표시	제 목	아름답고 쉬운 데이터 시각화 w/ 파이썬 (가제)
	부 제	

제2조 (출판권의 설정) 갑은 을에 대하여 본 저작물의 출판권을 설정하고 을은 본 저작물을 출판할 권리를 가진다.

제3조 (출판권의 존속기간) 을의 출판권은 본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간 존속한다. 갑 또는 을은 계약기간 만료일 3 개월 전까지 문서로써 상대방에게 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으며, 해지 통고가 없는 경우 이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된다.

제4조 (전송의 허락) 을은 계약기간 동안 본 저작물을 온라인 상에 전자책을 비롯한 디지털 자료의 형태로 복제, 전송할 수 있는 배타적 발행권을 갖는다.

제 5 조 (출판의 제한) 갑은 본 계약의 유효기간 중에 본 저작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스스로 출판하거나 제 3 자로 하여금 출판하도록 할 수 없다.

제 6 조 (원고인도와 발행 기한) ① 갑은 2022 년 12 월 31 일까지 본 저작물의 출판에 적합한 원고(원고, 본 저작물에 사용된 예제 소스코드, 그림, 사진 등을 포함)를 을에게 인도하여야 한다.

- ② 을은 제 1 항의 원고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출판하여야 한다.
- ③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위 항의 기한을 변경할 수 있다.

제 7 조 (비용의 부담) ① 본 저작물의 저작에 필요한 비용 및 원고 인도에 필요한 비용은 갑이 부담하고 본 계약에 의한 출판물의 제작, 발행 및 선전에 따른 제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.

제8조 (저작물의 내용에 따른 책임) 본 저작물의 내용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을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끼칠 경우 갑이 민,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.

제 9 조 (저작인격권의 존중) 을이 본 저작물의 출판에 적합하도록 내용, 형식, 제호 등을 변경할 때에는 반드시 갑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

제10조 (교정) 본 저작물의 출판을 위한 교정은 을이 실시하고 을은 갑에게 이에 대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.

제11조 (저작권의 표시 등) 을은 본 저작물의 복제물에 적당한 방법으로 갑의 성명과 발행 연월일 등 저작권 표시를 하여야 하며, 을은 본 출판물에 갑의 검인지를 생략한다.

제 12 조 (재판통지의무) 을이 본 저작물을 다시 출판하고자 할 때는 미리 갑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. 갑으로부터 수정 증감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을은 갑과 협의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.

제 13조 (정가, 부수, 장정, 판형 등) ① 본 출판물의 정가와 초판 발행부수, 장정, 판형, 제책, 출간 시기, 판매 방법 등은 을이 갑과 협의하여 정한다.

제 14 조 (저작권사용료) ① 을은 갑에게 정가의 10%에 해당하는 금액에 발행(판매)부수를 곱한 금액을 저작권사용료로 지급한다. 판매부수가 2,000 부를 넘어설 경우에는 12%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. 전자책 전송물의 경우 매출 정산액의 25%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.

- ② 을은 3 개월에 한 번씩 발행(판매) 부수를 갑에게 통보하고 통보 후 30 일 이내에 그 기간에 해당하는 저작권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. 인세 보고 기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시에는 상호 논의하여 결정한다.
- ③ 본 계약과 동시에 을은 갑에게 선불금 50만 원을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지급한다. 초판 제1쇄 발행시 을은 갑에게 초판 2,000부에 해당하는 저작권사용료를 출간 후 30일 이내에 지급한다. 단, 선불금은 초판 제1쇄 발행시의 대가에서 공제한다.
- ④ 갑은 을이 납본, 증정, 신간안내, 선전업무 등에 쓰는 책에 대하여는 저작권사용료를 면제한다. 다만, 그 부수는 매 판(쇄)당 20%를 초과하지 못한다.

제 15조 (중정부수) ① 을은 초판발행시 20부, 증판시에는 2부를 갑에게 증정한다.

② 갑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 정가의 70%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구입할 수 있다.

제 16 조 (권리의 양도 등) ① 갑은 본 저작물의 저작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 3 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을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

② 을은 본 저작물의 출판권을 제 3 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

제 17조 (2차적 사용) 계약기간 중에 본 저작물이 번역, 개작, 연극, 영화, 방송 녹음, CD 형태 등 2차적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갑이 그에 관한 처리를 을에게 위임하고, 을은 구체적 조건에 대하여 갑과 협의하여 결정한다.

제18조 (전집에의 수록 등) 계약기간 중에 갑이 본 저작물을 자신의 전집이나 그 밖의 편집물 등에 수록, 출판할 때는 미리 을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

제19조 (출판권 소멸 후의 배포) 을은 출판권이 소멸된 후에도 출판권 설정대가를 지불한 경우에는 이미 발행된 책의 재고품을 배포할 수 있다.

제 20 조 (계속출판의무) ① 을은 계약기간 중 본 출판물을 저작권법 제 55 조 제 2 항에 따라서 계속하여 출판하여야 한다. 단 출판물의 경우 월간 평균 판매량이 10 부 이하, 전송물의 경우 월간 평균 매출액이 3 만 원 이하가 될 경우, 갑과 을이 합의하여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② 을이 본 저작물을 계속 출판하지 않을 때에는 갑은 6 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독촉하며, 을이 이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때에 을은 본 출판권을 상실한다.

제 21 조 (원고의 반환) 특약이 없는 한 을은 본 저작물의 인쇄종료와 동시에 본 저작물의 원고를 갑에게 반환한다. 단, 본 저작물의 판면파일이나 발행데이터는 제공하지 않는다.

제 22 조 (해외번역출판권) 갑은 을에게 본 저작물의 해외번역출판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을의 노력으로 해외번역출판이 성사되었을 경우 을이 해외출판권자(또는 대리중개업자)에게 지불 받은 저작권사용료는 세액 및 제반비용을 공제한 후 갑과 을이 각각 50%씩 배분한다. 이때 을은 저작권사용료 보고 시에 계약서 및 비용과 관련한 자료를 갑에게 알려야 한다.

제 23 조 (분쟁의 해결)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,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해결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한다.

위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 통을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한 후 당사자가 각각 1 통씩 보관 한다.

2022년 8월 25일

저 작 권 자 (갑)					
성 명	이 제 🕏 (원) 🕶				
주 소 (주민등록상)	세종특별자치시 새롬중앙 1 로 13 새뜸마을 6 단지 606 동 1201 호				
주민등록번호	790224-1009417	전화 번호	010-8336-1561		
은 행 명	하나은행	계좌 번호	385-890332-22007		
출 판 권 자 (을)					
출 판 사 명	주식회사 책민				
주 소	경기도 안양시 통안구 학의로 282, 금강펜테리움 IT 타워 A 동 1611-1호				
사업자등록번호	239-87-02403				
대표자	김 희 정				